〈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현 -

2015. 1



순 서

I. 수립 배경 ···································
II. 수립 경과 ······ 2
Ⅲ. 혁신의 필요성 3
1.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3
2.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6
3.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8
Ⅳ. 혁신 비전 및 지향 10
Ⅴ. 혁신 전략 과제13
1.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13
2.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21
3.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31
4.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37
<참고 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비교
<참고 5>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56

I. 수립 배경

- □ 그간 각종 안전보건 대책(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대재해예방대책 등)의 마련·시행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
 - 하지만, 사망사고만인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건수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 OECD국가와 비교시 사고사망만인율(‰)은 0.78('10년)으로 일본('10) 0.22, 미국('10) 0.38. 독일('10) 0.18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지속 증가하여 **자연재해 손실액** ('13년 1,721억원)의 **110배**에 해당하는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 □ **단기적 성과**중심의 **경영**원칙 확산 등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제가 안착되지 못한 상황
 - 대기업(원청)에서 소규모 사업장(하청)으로 아웃소싱 확대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심화로 이로 인한 산재가 다발
 - "안전규정을 지키면 손해고 불편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낮고, 산재은폐도 상존
- □ 현장과 괴리된 법제, 대증요법식 감독,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등 현행 산재예방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 세월호 사고 이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노·사의 안전보건중시 인식 제고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적시에 활용** 필요
 -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필요

Ⅱ. 수립 경과

□ 산업안전보건 혁신 방향 설정(14.3~8월)

- 안전보건 환경 및 산재통계 분석, 안전보건정책 평가 등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추진('14.3월~)
 - * 산업안전보건 정책 발전방안 모색(한성대 박두용 교수 등)
- 정책자문위원회(5.29, 장관주재), 안전보건포럼(3.13, 5.7, 6.26)을 통한 노·사, 학계, 현장전문가의견 수렴('14.3~8월)
 - * 제도ㆍ사업, 집행 체계, 안전보건문화 등 분야별 발제 및 토론 병행

□ 안전보건 혁신과제 도출 및 초안 마련(*14.8~10월)

-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검토위원회*** 를 구성, 분야별 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집중 토의 및 마스터 플랜 초안 마련
 - * 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가,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등 20명
- 안전보건법제 개선, 집행효율성 강화, 안전보건정책 인프라 등 주요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총 6차례 집중 토의
 - * 1차(8.28) 마스터 플랜 혁신 방향, 2차(9.12) 안전보건법제 개선 및 집행 효율성, 3차(9.18) 안전보건정책 인프라, 4차(9.25) 안전보건시장 활성화, 5차(10.2) 업종·취약계층 특성별 맞춤형 재해예방, 6차(10.17) 총괄 정리

□ 의견 수렴 및 확정('14.11~12월)

- 노·사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11.20), 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원회 (11.25), 관계 부처(10.16, 11.27), 주요기업 안전담당자(12.4)등 의견 수렴
-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12.9)를 통해 노사,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12.26) 심의·확정

Ⅲ. 혁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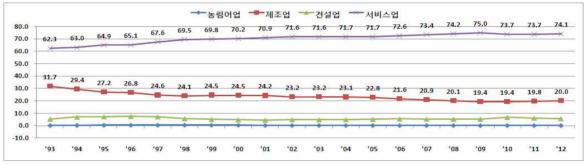
1 |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

❖ 산업구조 생산방식의 변화,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증가, 재해요인의 다양화는 안전보건정책의 초점과 접근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1> 환경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90년대부터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건설업은 10%내외를 유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생산방식의 변화)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추세
 - * 업종별 사내하청 비율 추이('08.5월→'10.8월) : (조선) 55.1% → 61.3%, (철강) 42.1% → 43.7%, (자동차) 14.3% → 16.3%
 - *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4,364천명 중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는 878천명(20.1%)에 달함('14년 고용형태 공시) 나 조선업, 철강금속 등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소속외 근로자의 64% 차지
- (저출산·고령화)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노동력의 양적·질적 문제 심화
 -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21년까지 베이비부머(상용직) 연평균 20만명 은퇴
 - ** '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7%)---'17년 고령사회(14%)---'26년 초고령사회(20%)
- ◈ 경제의 서비스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안전보건정책 전달체계를 재구성하고 초점을 양질의 노동력 확보로 재설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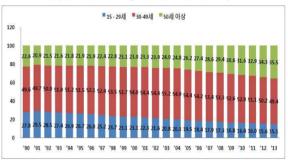
<2> 취약 계층의 증가

○ (근로인구의 고령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젊은 층 취업자는 줄어들고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내 고령화 현상 발생

<취업자 증감(천명) >



<취업자수 연령대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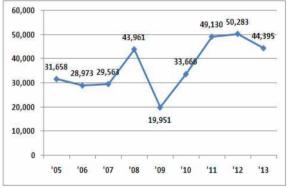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외국인 근로자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신규 외국인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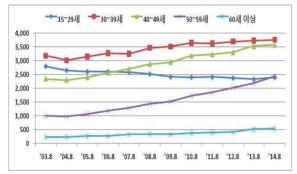
- (여성근로자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 여성 경제활동 참가비율(통계청 경활조사) : '63년 37% → '13년 50%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증가)** 50인 미만 근로자수 및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및 비중 : '01년 486만명 46% → '13년 875만명 57%
 -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3년 기준 193만개소로 '01년 88만개소 대비 약 2배 증가
- ◆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고령・여성・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사업장 특성별 맞춤형 보호 대책의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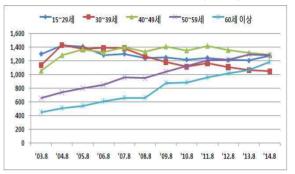
<3> 근로자의 이동성 증가와 재해요인 다양화

○ (직장 이동성 증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추세가 높음

<연령별 정규직 추이(천명)>

<연령별 비정규직 추이(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국가 고용안정성 지수)이 38%로 OECD 회원국(36개국)중 최고, 근속기간 격차도 55개월에서 고착화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비교>

(단위 : 개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2.9	54.3	54.1	55.1	57.1	58.6	59.4	61.2	64.0	66.8	67.3
정 규 직	69.8	71.8	70.1	71.3	73.9	78.6	77.3	79.2	82.2	84.8	85.3
비정규직	24.1	23.9	25.1	26.3	24.2	21.2	23.6	26.5	27.7	29.6	29.6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근속 1년 미만 저숙련 근로자의 재해 비중도 지속 증가 추세
 - * 신규근로자 재해자수 및 비중 : 50,592명 56.9%('04) \rightarrow 60,326명 65.7%('13)
- (재해요인의 확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계·기구, 화학 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 * 직업병 유소견자(명): '05년 2,204 -> '09년 4,734 -> '11년 5,977 -> '13년 7,649(잠정)
 - * 질병이환자(명): '05년 6,400 → '09년 7,941 → '11년 6,516 → '13년 6,788
 -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 직무 스트 레스, 직업성암, 생식독성 등 **다양한 산업보건 문제가 사회 이슈화**
- 근로자의 이동성 강화와 위험요인의 다양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정책 대응체계 구축 필요

2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

- ❖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적 운영과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 상존
- ❖ 제조업·정규직·사고발생이력 중심 정책접근의 현실적합성 결여

<1> 안전보건 질서 형성 미흡

- (기업의 책임 불명확) 법적·사회적 안전보건 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발생시 형사처벌이나 개선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
 - 대기업(원청)이 하도급 생산 방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하청)으로 안전보건책임이 전가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사각지대 확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실상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곤란한 상황
 - *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안전관리 외부위탁 허용,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 (근로자의 역할 부족) 안전보건 보호 대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한정되어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굴 관리 주체로서의 인식 부족
 -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도 기제가 미흡*
 -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미활성화, 위험성평가 등에 근로자 참여 의무 미비 등
 -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시 제재가 확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법 25조) 위반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보호구 미착용과 같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 ◆ 안전보건 주체로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및 인식 제고 노력 병행 필요

〈2〉 정책의 대응성 약화

- (환경변화 대응 미흡)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제도와 정책 접근 유지
 -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신규 화학물질, 장시간 근로, 잘못된 근로자세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미비
 - 사업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14.8월 608만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의 사각지대 발생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산업(업종) 중심의 전달체계 필요
- (결과중심 대응) 안전보건 감독 및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선정 시 과거 산재발생 이력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산재예방 효과 저하
 - * 사업장 감독기준 :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하여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근원적인 산재예방 관리가 미흡
 - * 위험기계ㆍ기구(끼임 절단), 고소작업(추락), 밀폐공간 작업(질식), 화학물질 등
- (보건분야 관심 부족) 근로자 건강관련 사항은 피해사항이 즉각적 으로 나타나지 않아 인력, 예산 투입 등 정책적 관심 부족
 - * (예산) 안전분야가 보건분야보다 약 3배 많음, (인력) 지방관서·공단의 경우 안전분야가 보건분야 보다 약 2.5배 많음
- 환경 변화 대응성의 약화, 재해발생 사업장 중심 접근에 의한 정책 지체의 심화, 안전분야 중심의 역량 집중에 따른 정책 불균형 개선 노력 필요

3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

◆ 안전보건규율의 복잡·형식화, 불안정한 안전보건시장, 안전보건 문화 미성숙,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 기반의 취약성 노출

〈1〉정부와 시장의 비효율성

- (규율의 복잡성) 방대한 조문, 난해한 전문용어(기계, 설비, 작업, 화학 물질 등) 등으로 수규자의 이해 곤란과 준수가능성 저하
 - * 산안법 9장 113개 조문, 시행령 112개 조문, 시행규칙 5편 222개 조문,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편 31자 670개 조문 등 총 1100개의 조문
- (정보·지식의 단편성) 각종 사업장 정보(위험기계기구, 사용 화학물질, 점검·감독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정보가 서로 상이한 DB로 저장되어 있어 상호 검색, 정렬, 분류 등 정보처리가 곤란
 - 안전보건 연구, 통계 분석 도 각각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장기 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시장의 무기력성)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부족으로 안전보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짐
 - 안전보건 수요자가 서비스의 질보다 낮은 가격을 선호(일명 레몬 효과)하여 안전보건시장도 위축되는 경향
 - \star 안전 \cdot 보건 지도서비스 근로자 1인당 단가 : 안전관리 5,700원, 보건관리 3,760원
- ◈ 노사정과 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있도록 하는 법제·정보·시장 인프라 확충 필요

<2> 안전보건문화의 미성숙

- **(낮은 안전의식)** 현행 노·사의 안전의식*이 낮고 기업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 * OECD 조사에서도 우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신뢰도가 하위권 형성 (직업능력개발원, '14.6.12, '취업자의 안전의식 국제비교')
- (형식적 안전보건교육) 이론 위주의 집체교육 중심의 교육운영 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역량 형성에 미흡
 - * 사고사망재해는 기술적 원인 37%, 교육적 원인 20%, 작업관리적 원인 40% 정도로 발생하며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약 60%의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3> 거버넌스 구축 미흡

- (정부) 생산중심 부처*와 안전중심 부처**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규율 체계의 혼선*** 발생 및 안전보건산업 및 시장 형성 미흡
 - *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 ** 고용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기존 규율체계 사실상 형해화
- (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일부 업종에서 구성 운영중이나 대기업 위주의 참여로 대 중소기업간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미흡
 - * 예시: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사내 하청업체를 포함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평가하여 차등관리) 등
- (지역) 제조업 등이 밀집해 있는 국가·지역·농공산업단지의 안전 보건 협력체계 미구축으로 안전보건정책의 효과성 저하
- (공공부문) 중앙(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등), 지방(고용부 지방관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안전공단, 토지공사, 전력공사 등) 부문별 산재예방 협의채널 미비
- ◈ 정부, 산업계, 노동계, 공공부문 등 전사회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의 확충과 활동 강화 필요

Ⅳ. 혁신 비전 및 지향

비전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

- * 사고사망만인율 13년 0.71‱ → 19년 0.3‰대
- * 중상해재해율(휴업 90일 이상) 12년 0.26% → 19년 0.1%대

기본 방향

- ①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 ② 인프라 확충과 대응 능력 보강을 통한 안전보건정책 역량 강화
- ③ 교육 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기업) 안전보건 책임 확대 ○(근로자) 안전보건 참여와 역할 강화 ○(정부) 안전보건규율 확행 및 지원 효과성 제고 ○(전문기관) 안전보건 역할 재정립
추진	대응 능력 제고	○(재해요인)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강화 ○(미래대응) 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관리체계 대폭 강화
과제	확고한 기반 구축	○(법제) 안전보건 규율체계 재구축 ○(정보시스템) 안전보건 지식·정보 기반 확충 ○(산업) 안전보건산업 육성 및 시장 형성 지원 ○(협력체계) 거버넌스 구축 및 동반성장 여건 조성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안전교육) 교육유인 확대와 맞춤형 교육 강화 ○(안전문화) 컨텐츠 다양화와 실천분위기 확산

<지향 1> 안전보건정책의 현실적합성 제고

- □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효과성 저하
 -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
 - 백화점식 정책, 정부의 **정책의 초점 불명확**으로 기업, 근로자, 전문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의 안전보건 시너지 효과 저하
- □ (미래) 산업현장 밀착형 안전보건정책 추진
 - **환경변화**에 대해 지속적 조사·분석,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적시 마련
 - 정책목표를 명확화*를 통해 사업장 감독,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각종 예방사업 등 정책역량의 결집 도모
 - * 사고사망 및 중상해 이상의 재해(예시 휴업 90인 이상 재해) 감소

<지향 2>

안전보건 참여 확대와 책임의 명확화

- □ (현재) 기업 및 근로자 안전보건 인식 부족
 - 기업의 형식적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의 수동적 자세 및 역할로 인해 낮은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 아웃소싱의 확대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근로자의 이동성 증가 등으로 안전보건 책임의 불명확
- □ (미래) 안전보건주체별 책임 명확화
 -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제고
 -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

<지향 3>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 □ (현재) 재해발생 결과 중심 대응 체계
 - 재해 원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미비에 따른** 기존 재해 발생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역량 집중으로 **정책의 효과성 저하**
 - * 재해 발생사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안전 보건 정책역량이 집중 되는 경향
 -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접근 부족으로 **중요** 안전보건 이슈가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남
 - *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특수형태 종사자, 보건 이슈 등
- □ (미래) 재해원인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
 - **재해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다발 요소에 대한 집중 감독·기술 지도,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신기술 개발, 산업구조개편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연구 기반 구축 및 정책 대안 마련

<지향 4>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과 문화 정착

- □ (현재) 취약한 인프라와 낮은 안전의식
 - 형식화된 안전보건관련 법령, 단편적인 정보·지식, 부족한 협업 체계 등으로 **안전보건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
 - 서류 중심의 기업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규정·절차와 실천의 괴리로 **안전문화 지체**
- □ (미래) 내실있는 인프라 확충과 실천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 기업, 근로자 등 수규자 중심의 쉬운 법체계로 개편,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 업종·산업단지·지역별 리더십 확충 및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 안전보건 **실천분위기 형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Ⅴ. 혁신 전략 과제

1 |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 기업 권한에 상응한 책임 강화, 근로자의 역할 확대, 정부의 법 확행과 지원사업 확대, 전문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안전보건질서 확립

<1>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 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 * (現) 20개 위험장소 공동의무 부과 → (개선)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 된 위험장소로 확대
 -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경우 이를 불법 파견의 징표로 오해되지 않도록 근로자 파견 판단지침 개정 검토
-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간 상호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 * 예시 : 원청의 밀폐공간장소 내 하청업체 작업시 유해가스 차단 및 내부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하도록 허가

□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 강화
 - * 도급 인가대상 확대(작업방법의 위험성, 사용물질 유해성 등 고려), 인가 기간 설정(3년마다 재인가). 재인가 심사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 ◇ 하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 총 근로자 대비 하청소속 근로자 비율 : 조선업 61.3%, 철강업 43.7%, 기계·금속 19.7%, 화학업 18.8%, 자동차제조업 16.3%, 전기전자업 14.1%

□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
 - * (현행)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자 → (개정)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불가항력,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기를 연장하도록 의무화
- 건설업 등 발주자가 여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 *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가 여러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므로 시공업체간 안전보건조치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정관' 선임

②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

- □ 대규모(3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복원 및 강화
 - 고위험 업종(조선·철강·건설 등)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제한 추진*, 안전· 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 *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검토
 - **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제한 업종, 정규직 고용범위 등 결정
 - 원·하청간 공생 협력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 □ 중규모(50~299인)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내실화
 -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 *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KOSHA18001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 소규모(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제 기반 구축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과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 10~49인 사업장의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제도화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도 물량 대폭 확대
- ◇ 공공부문 인력・역량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③ 기업의 투자 확대

□ 안전보건투자 성과 측정 모형 개발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재해감소 정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변화 등을 통한 효과성 측정
 - * 안전 시설개선 투자금액, 안전 · 보건관리자 인건비, 자료개발 및 교육비 등
 - 안전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14년말 종료)의 연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투자금액의 3%) 확대
- 기업 재무제표 계정에 '안전보건투자' 항목이 신설되도록 유도하여 안전보건 투자 상황의 투명한 관리 도모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 안전보건투자 금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 내역,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 *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여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 사업주가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주요내용(취급 유해· 위험물질,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 안전보건 투자 확대 유도

- 클린사업, 융자, 안전투자펀드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사업장 작업 환경개선 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
- 소속 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안전보건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사례 발굴·전파하고 정부포상 추진

<2>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

① 근로자 참여 제도 확대

- 현장의 재해요인, 사업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 작업현장의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회피를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점검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
 - * 유해위험성 인지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

- 근로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업종별 안전보건 실천 체크리스트* (스마트폰용 앱) 개발
 - * 업종별 주요 위험요인 정보 및 예방조치 내용 확인, 보호구 착용 등
-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 부여
 - *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 건의"를 추가
-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 확행
 -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PSM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구 미착용근로자, 안전장치 제거 근로자 등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현장 안전보건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
 - * 중앙단위 노·사·정 및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노·사단체가 함께 산업현장 단위의 안전수칙 준수, 산재은폐 근절 등의 운동 전개

〈3〉정부의 정책효과성 제고

□ 중대재해 중심의 정책목표 정립

- 사업장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정책 추진의 목표를 재해율* 감소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및 중상해재해율**로 전환
 - * 현재 재해율은 감독대상 설정, 산재다발사업장 공표, PQ 등 전 정책분이에서 활용
 - ** 장해가 남는 재해로서 구체적 범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예시 휴업 90일 이상 재해)
- 정책 추진시 활용되는 통계도 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및 중상해재해율로 전환

② 사업장 감독 내실화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장 감독의 실효성 제고
 - 정기적이며 획일적인 감독을 지양하고 사망사고 다발작업 및 원인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을 선정·집중감독
 - * ▲제조업(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 ▲ 건설업(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 ▲직업건강(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 다발재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감독 실시로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전환
 - * 시기별 재해 특성을 반영, '○월은 ○○재해 예방의 달' 등으로 선정·집중 홍보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컨설팅 등 사전 예방감독 실시
 - 특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종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조치 확행
 - 향후 사업장 감독 방식을 현행 물리적 요인 개선 중심에서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
 - * 물리적 위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결함을 함께 지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한 후에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때까지 지속적 사후관리

□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및 전문성 보강

-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
 - *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는 약 6.900개소로 현장집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 이공계 전공자, 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 추진
- 안전보건 전문교육 이수를 위한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지속 추진
 - * 형사소송법, 수사실무 등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법제, 업종별 작업특성·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3~6개월 정도 집중교육

③ 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확충

□ 선제적 재정 투자 확대 및 사업 재편

- 예방사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 예산 증액
 -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불량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기술지도 단가 현실화, 안전보건 체험관 설립. 안전보건컨설팅 대폭 확대 등
- 평가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
 - * 주요평가항목 : 사업장별 효과성(재해감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투입 금액 대비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전문가 정성평가 등
 - 사업 설계시부터 일몰제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평가를 병행하도록 사업설계

□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업종, 기업 규모, 발생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지방관서·공단 합동으로 전답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클린, 융자, 안전투자펀드 등 재정 지원책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재해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집중 지원
 -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집중지원

〈4〉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

①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정립

□ 재해예방 사업의 초점 조정

- 클린, 융자사업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는 민간에 이관하고 여유 역량을 산업현장에 대한 컨설팅, 기술지도에 집중
 - 아울러 안전분야로 편향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보건분야로 확대 하여 균형성 강화(보건예산 대비 안전예산 비중 現 3배 → 2배)
- 사업·관리대상 설정 시 과거 재해발생 이력 보다는 재해 유발요인 다수 보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변경
- 신기술, 신공법, 신종 직업병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사업 수행 하고 취약계층 등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 재해예방 중심기관 위상 강화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서비스가 적절히 제공하는지 평가· 피드백·관리하는 재해예방기관의 HUB 역할 수행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능 지원 하고, 각종 기술정보, 선진국 동향 정보 등을 제작·보급
- 연구인력 확충, 연구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신 정책, 신기술 및 지식 등에 대한 적시 제공 기능 강화

□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사업장에서 직접 지불토록 하는 방안 검토
 - 기업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안전산업 구축
- 新 기술에 대한 연구, 실용화를 지원하여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 ICT를 활용한 센서류. 첨단소재 보호 장구류,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②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

□ 안전보건서비스 질 제고

- 재해예방기관의 경우 기술지도 및 사업장관리 충실성, 직원 전문성, 재해감소 실적 등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차등관리
 - 제조·서비스·건설업, 보건관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조정
 - *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 조치
- 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의 경우 인력·시설·장비 보유 현황, 부실측정여부 등 업무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 * 부실측정(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특정자 자격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측정(조사)명령 확행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고 주기적 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 개선(산안법 개정)
 - * 직원 교육실적을 재해예방기관 평가시 반영
- 재해예방업무에 대한 직무능력표준(NCS)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 대학과정 개설·운영
 - * 장기적으로 자격과 연계하여 과정을 마친 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 구축

□ 안전·보건서비스 기관 효율화

- 현행 안전·보건관리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종합적인 진단·평가도 가능하도록 기관의 역량 제고
-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퇴직자 그룹을 활용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참여 등 고용창출 지원

2 |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 재해다발 요인 특성과 안전보건 환경 변화 반영,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대폭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1>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안전 인증 및 검사 제도 개선 및 확행

- 안전인증 대상이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누락된 위험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대상에 추가 * 추가 대상(예시) :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등
- 위험기계기구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종자의 자격· 면허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
- 위험 특성과 사고사례 및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특별교육, 리플렛 배포 등 인식제고 활동도 병행

□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기반 구축

- 위험 기계·기구의 판매·유통·사용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기반을 확충
- 동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인증 및 검사대상 누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영세업체의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 * 클린사업에서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15년)

^{*} 주요 재해원인 : 위험기계·기구(사고성 재해의 약 30% 차지), 고소작업(추락재해 주요원인), 밀폐공간질식·소음(업무상질병 유소견자의 90% 차지), 배달재해(청소년 산재 사망자의 97% 차지)

② 고소작업시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장비 설치공사 등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 사업 지원품목(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확대
 - * '10년도 산업재해 원인조사(10,037명 분석) 결과 전체 추락재해자(1,730명) 중 높이 2미터 미만 추락재해자가 26.2%(453명)를 차지
-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 안전조치·시공절차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비
 - * 상·하 동시작업 시 낙하물 등에 의한 재해예방 관리, 고층부 바람 세기 등을 고려한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기준 강화 등
- 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하는 한편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과부하 방지 장치 등)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추락사고 예방 강화
 - * '15년 100명 증원(230명) 확대

③ 밀폐작업시 안전보건조치 강화

- 현행 개별적으로 규정된 밀폐공간(17개 장소)의 범위를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산소농도 18%미만 → 19.5%미만)까지 확대
 - * 밀폐공간에 대한 안내표지도 현행 '관계자외 출입금지'에서 '질식사망사고 발생위험장소'로 변경하여 출입위험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주도록 개선
- 원청의 질식사고 위험장소(화학공장 탱크, 맨홀, 오폐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강화*
 - * 밀폐공간작업 해당여부 사전 조사, 하도급시 유해 위험 및 예방조치사항 하청 업체 고지, 다수의 하청업체 동일장소 작업 시 연락체계 구축 운영 등 의무 부과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필수장비(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 대여 및 교육 확대

④ 소음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소음성난청 예방 강화
 - * 現 측정결과 90dB(A)초과, 질환자 발생 → 85dB(A)초과, 유소견자(D₁) 발생
-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을 규모별로 차등관리*하고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사업장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강화
 - * ▲중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 강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컨설팅 강화
-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확대
 - * 50인 미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원적인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설비·작업환경 개선 시 지원 확대(지원 품목 추가 검토)

5 배달사고 예방대책 마련

- 사업주에게 이륜차 운행 근로자의 근원적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헬멧 등 "보호구 지급 의무" 부여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개정
- 음식배달 주문자*, 배달 근로자**, 사업주*** 등 배달 관련 당사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추진
 - * '빨리빨리 배달 문화'와 사고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 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캠페인 및 각종 재해예방자료 배포
 - *** 프랜차이즈 업체 지도를 통해 안전배달 환경 조성

6 미끄럼 재해 예방 강화

- 위생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미끄럼재해가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 으로 사업장 바닥, 계단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추진
 - * 미끄럼 위험장소 표시, 미끄럼 방지화 사용, 바닥청소 방법 개선 등
- 업종별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미끄럼 사고사례, 재해예방 매뉴얼, 교육용 동영상 등을 제작·보급

<2> 대상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 강화

① 맞춤형 안전보건지원 강화

□ 신규 근로자

- 신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식(이론교육), 기능 및 태도(현장교육) 3가지로 나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제고
 - * ▲(지식) 필수 이론적 기초지식 교육(사이버 및 집체) → ▲(기능) 작업 중 안전작업방법을 현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습득 → ▲(태도) 재해예방 안전 행동수칙을 직상급자 등으로 부터 습득
- 설립 1년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진단 및 안전보건 종합패키지 지원
 - * 안전관리규정 · 안전수칙 등 작성지원. 안전성평가 컨설팅 등 지원

□ 장년 근로자

-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 병행
 - * 장년근로자 재해의 약 50%는 넘어짐, 떨어짐, 부딪침으로 이는 깨끗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의 유지만으로도 예방 가능
- 장년근로자의 신체 특성(근력, 시력, 청력 저하, 순발력 저하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추진(클린, 융자 등으로 지원)
-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 및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보건 기준의 개정 검토
 - * ▲(운동기능) 평형감각·집중력 저하를 고려한 안전난간대, 경사로 등의 기준 변경, ▲(감각기능) 시각기능 감소와 관련 안전보건표지의 문자 크기 조정

□ 여성 근로자

- 여성 다수 고용 3대 업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주제별 홍보캠페인 전개
 - *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재해, 요양보호사 등의 근골격계 문제, 모성보호 (흡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 피해) 등
- 다수고용 직종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및 건강증진·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 근로자 생애주기별(미혼기, 출산양육기, 중년기, 노년기) 건강관리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 H-2 중국동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 확대(現 3시간 → 4시간), 강의식 안전보건교육의 실습형 전환 등 교육 내실화
 - * 현장작업시 필요한 보호구 착용 실습 등 참여형 교육위주로 운영하고,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표준교재안, 시청각 매체 등 제공
-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다국어 안내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교육에 활용
- 외국인 고용업무 담당기관(인력공단, 고용정보원 등)과 산재예방업무 담당기관(안전보건공단)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교육실시 현황 등

□ 청소근로자, 현장실습생

- 청소근로자, 현장실습생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 중점 점검사항 : ▲청소근로자 : 세척·휴게·세탁 시설 등의 제공여부, ▲현장실습생 :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
- 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기준이 담긴 작업매뉴얼 보급 등 추진

② 재해근로자 직업복귀 지원 확대

□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 연계

- 요양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확대(現 3,500명 → 5,600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 상병명, 요양기간, 진료구분 등을 종합하여 집중관리 대상 분류, 스마트폰을 활용 개인별 특성·재활수요 파악 및 각종 재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
- 요양 중 심리상담,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장해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 직업재활 중심의 통합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수가화*를 추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산재의료재활 관련 역할 강화
 - *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수 : 現 6개 항목 → 시범운영 중인 30개 항목
- 임상데이터에 근거한 재활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통해 산재의료재 활표준을 마련하여 의료재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재활치료프로그램: 척추질환,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 산재 다빈도 상병

□ 원직장 복귀 등 직업복귀 지원 확대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star 現 장해등급별 지원 \to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요양초기에 원직장 복귀 여건 및 의사를 파악하는 체계 구축으로 상담·지원 강화

□ 안정적인 사회복귀 정착 지원 강화

- 요양 종결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병군을 확대하고, 상병별 진료기준을 재정비하여 산재근로자 재요양 방지
- 수요조사를 통하여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을 신규로 개발하고,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고용유지 및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 * 現 연간 100명 수준 → 연간 300명 수준

<3>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업종)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확대

- 사고 다발 5대 위험업종*에 대한 재해유형별 중점관리, 안전보건 기술지도, 복지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협업 강화
 - *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업, 보건 및 사회복시사업, 도소매업
- 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 신설 및 위험작업별 지침(Kosha Guide) 개발、보급
- 대형마트·백화점 등 고용·입점형태가 복합적인 경우 영업장 종합 관리 주체와 입점업체와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기업 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집중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제 미구축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 강화 유도
 - 아울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 융자 등 재정지원 확대
- 산재예방요율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유도(現 제조업 대상 → 재해다발 타 업종)

□ (근로자 여부) 특수형태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 특수형태종사자와 관련한 업종별 협회* 등과 산재예방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각종 자료 제공
 - * 대한건설협회,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지자체의 자영업자 관련 DB를 활용하여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제공

〈4〉 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

□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 재직자 건강관리 협업체계 구축

-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당뇨, 고혈압, 뇌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복지부 협업)
 - * (정보체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단위 건강정보(건강진단 결과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 (전달체계) 고용부 지방관서, 근로자건강센터, 지자체, 보건소 등의 협업 강화
 -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군(근골격계, 요통 등)을 선정하여 집중 예방활동 전개
 - * 작업자세 개선을 위해 3N 운동(Near, No bending back, kNee,)을 보급·확산하고 주요 고위험업종(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만성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안전보건교육 내용 포함.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 근로자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여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허브기관으로 육성

□ 사업장 건강증진 체계 활성화

-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 운수업 등 질병 다수 발생 업종으로 확대하고, 선임자격을 합리화*
 - * 예: 대기환경기사는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직업성 질병 등 근로자 건강관리와 무관
- 사업장의 자율적 건강증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 확대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정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및 사례 발굴·전파

□ 연령 세대별 안전보건 배려 확대

- 세대별 다발 질병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
 - * 예시) ▲10~30대: 음주,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 시전예방, 직무스트레스 방지, 운동처 방등을 통한 질병 사전예방, ▲40~50대: 고혈압, 뇌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60대~: 근골격계 등 작업능력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관리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홍보, 교육 등을 강화

② 새로운 재해발생요인 관리 강화

□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강화

-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폭력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방안 추진
- 감정노동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이동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범위 확대(現 751종 관리) 및 유해・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 * 제조·사용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 ** 평가대상 선정, 독성시험, 관리수준 결정기준 마련 및 절차 보완 등
 - 밝혀진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유해도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신설
 - * 특별관리물질(현재 16종)은 취급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 외에도 취급 물질 고지 및 일지 작성 의무를 부과
- 사용물질, 노출정도·작업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등 대책 강구
 - * 반도체·LCD공정의 생식독성 물질, 나노물질 등에 대한 실태 및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대응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사업장·근로 자에 대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제공 기능 강화
 - * 시료채취 후 분석을 통한 MSDS의 신뢰성 검증 확대 등

□ 나노물질 보건관리체계 마련

- 나노물질 정보관리 DB구축* 및 공기 중 노출 측정·평가 기반** 마련
 - * 나노물질 목록. 취급 근로자. 노출 현황 등 조사
 - ** 취급 사업장 노출 모니터링 평가 체계 구축, 작업 공정 별 가능한 나노물질 노출 시나리오 결정, CNT 등 제조 사업장 노출 평가 등 연구 추진
-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한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기준 등 보건 관리 지침 마련

□ 신규 안전조치기준 강화

- 신공법, 신기술에 대한 연구·분석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기준 마련
 - * 전기설비공사 무정전(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시공) 기법, 하수슬러지 탄화 공법(오폐물을 고열에서 소각) 등
- 생산자동화 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관련 기준 신설

□ 新 재해발생요인 발굴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 유해 작업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노출기준 초과, 관리수준 이상, 관리수준 미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 * 현재는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할 경우에만 관리
- 세부 분야별* 보건진단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진단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진단기관 지정을 확대
 - * 화학물질관리, 환기, 소음, 근골격계 질환예방 등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 지식·정보 기반 확충,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과 협력체계 확충을 통한 안전보건 기반 공고화 추진

<1> 규율체계 재구축

3

① 법 체계 선진화 추진

- 수규자의 법률 이해도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을 구분
 - * 예시 : 산업안전보건기본법 + 유해위험요인별 개별법 체계
 - 위험기계·기구 인증,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허가, 작업환경 측정제도, 지도사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을 분법화
- 산업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제정
 - * 업종 · 유해위험요인 등 각 분야별 안전보건지침, 표준 작업환경 등을 규정
 - 안전보건기술지침이 기술발전, 작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법령정비 체계 구축
 - * 민간 전문기관에서 기술지침 제·개정 실무를 담당하고 고용부(안전공단) 에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후 사용

2 법 적용 범위 확대

- 법 적용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all worker)으로 확대*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
 - * 산안법의 보호범위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 취업과 관련된 생명 및 건강의 문제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과 배치
- 업무위탁사업주, 도급인을 위하여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생활하는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③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합리화

- 의무의 목적, 고의·상습성, 사고의 반복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칙기준을 마련하고 형량을 재조정
 - * 예시 :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과태료 합리화, 근로자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제외 등
- 법률상 의무 이행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대상) 과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향후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
 - * 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등
 - (절차)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 → 일정기한까지 의무이행 명령 → 미이행시 행정벌 대신 금전적 부담인 이행강제금 부과

④ 위험성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예방관리 체계로 전환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신설 및 불이익 제공**을 통해 위험성평가 제도 저변 확대
 - * 위험성평가 미실시. 기록·보존의무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 클린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계획 미이행시 행 사법 조치 대상^{*}과 지도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조치
 - * 산안법상 벌칙조항으로 규율하는 대상.
 - ** 산안법상 규율하지 않는 노 사 자율개선 대상
- 사업주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순응유도
 - * 공단 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반복 교육 기술지도, 언론매체 홍보 등

〈2〉지식·정보 기반 확충

□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및 분석 강화

□ 합리적인 산업재해 통계 산출

- 업종, 규모, 근로자 특성(근속연수, 연령, 성별 등), 유해요인 특성(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등)에 따른 재해 현황 등 산재통계 분석·활용
- 산재보상 통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환경조사*, 작업 환경실태조사** 등의 각종 조사 결과를 연계·분석한 결과도 산출
 - * 가구 별로 근로자 근무형태, 건강상태, 재해발생 경험 등 파악(3년 단위 조사)
 - ** 사업장 별로 화학물질 취급량,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파악(5년 단위 조사)

□ 체계적인 사업장 접근 기반 구축

- 업종, 사업장 규모, 재해근로자 특성,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재해발생 현황 분석
- 동 분석을 바탕으로 감독 대상 및 기술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도모
-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 통계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방안 마련
 - * 도급의 장소, 상시성, 전속성,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 산출기준 설정

② 안전보건 지식 기반 강화

- 안전보건 관련 R&D 예산 확대, 산업구조 개편,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新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예방대책 수립
 - * 연구비의 일정 부분은 3년까지 예측치를 확보(연구과제 시전 공지) 또는 장기연구 지원
- 안전보건공단 연구원과 대학과의 기능 분업화를 통해 중장기 과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 강화
 - * (대학) 중장기 정책 연구, 학술 개발 연구, (공단) 단기 정책 연구, 산재통계 분석, 전국단위 조사 연구, 화학물질 등에 대한 기초실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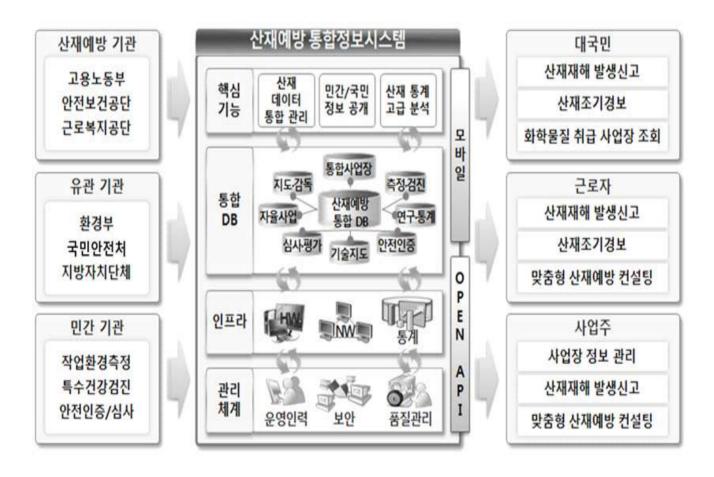
③ 통합 정보체계 구축

□ 체계적 사업장 관리 기반 마련

- 지도·감독 실적, 각종 측정·검진 결과, 위험기계기구·화학물질 근로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관리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지도·감독 대상 설정, 정책 지원 대상 선정시 활용하여 안전보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안전보건 통합정보망 구축

- 고용부 안전공단 복지공단 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각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지방관서, 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간 네트워크 설정



〈3〉 안전보건 산업 육성 지원

□ 안전서비스 산업 활성화

-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 단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 등을 통하여 적정 기준단가 책정

□ 안전시설·장비 제조 산업 육성

- 보호구 생산 등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 확대(중기청, 산업부 등과 협업)
 - 제품개발단계에서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은 안전장치 개발 등 산학협력 사업 추진 및 안전산업 관련 R&D 확대
 -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투자펀드' 활용, 안전보건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치방안 등 검토
- 안전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분야(예시: 화학물질 보호복 등)를 발굴하여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인증제품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종사인력의 역량 향상

- 안전보건 관련 대학의 확충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 기업-대학이 연계하여 안전보건 관련 대학(원) 과정 신설·운영시 재정지원 확대
 - * 안전보건분야 계약학과에 입학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등록금 지원
- 폴리텍, 직업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맞춤형 재직자 향상훈련과정 확충
 - * 관련분야 퇴직 전문가를 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4〉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 범 국가적 산재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 노·사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리더회의 구성·운영
 - * 참여기관(안) : 관련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안전처 등), 노·사단체, 유관기관(안전 공단, 복지공단, 승강기기술원, 안실련 등), 업종별 단체(철강·조선·건설 등 협·단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소관 사업 추진 시 산재감소 목 표를 설정하고 실적관리
 - * 산재보고제도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산재도 보고 · 관리 강화

□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 확충

- 철강, 조선, 건설 등 주요 업종별로 구성된 안전보건 리더 그룹*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업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
 - * 철강, 조선, 건설, 서비스, 자동차, 전자·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CEO로 구성
-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 소속 기업, 유관기관간 안전보건 협의 강화
 - * 기타 국가ㆍ지역ㆍ농공산업단지의 경우 지방관서 중심으로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대기업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개발

- 기업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기술지도 실적 등을 지표화
- 대기업별 지표 값을 주기적으로 평가·공개하여 원·하청 안전 보건 상생협력 유도 * 동반성장지수에도 포함 검토

□ 공공부문 안전보건리더십 구축

- 공공기관별로 지정된 CSO(안전책임관)에게 기관별 추진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 부여
-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산재감소 실적을 반영* 발주공사 재해발생 현황, 안전관리 노력도 등 반영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및 실천 공감대 형성, 노사정 공동 산재은폐 근절을 통한 안전보건문화의 확산 추진

〈1〉교육 내실화

4

□ 제도 개선 및 참여 유인 확대

- 실습 사례교육,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제도 전면 개편*
 - * 개편 방향: ① 이론 위주 교육 → 실습·사례(체험) 위주 교육으로 변경 ② 인터넷 교육 또는 집체교육 → 집체교육 일정부문 의무화 ③ 정기교육 시 단시간교육 (tool box meeting 등) 인정 ④ 집체(이론)교육과 현장(업종별, 직종별)교육 병행
-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 참여 확대
 -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료 할인(10%)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전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참여

□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계층별) 사업장의 각 계층(경영자·관리자·현장감독자·근로자)이 자신의 안전보건 관련 역할 및 실천 방안 교육 실시
 - 특히, 고의·상습적 의무 위반, 동종 재해반복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발주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 안전교육 실시
- (예비산업인력) 특성화 고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안전·보건 과목을 포함하여 기초 안전의식 함양
 - * 고등학교('13년) 안전보건교과서 제작 완료 → 서울 한양공고 등에서 시범 운영 중

□ 교육 인프라 확충

- (업종·지역별) 산업별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 안전체험관을 확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강화
 - *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을 건설업에서 조선·철강업 등으로 확대, 인적 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등
- (교육 컨텐츠) 사고 다발 고위험 업종별 재해사례, 공정·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및 점검 목록 등을 종합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개발
 - * 現 조선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 → 향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가사서비스업 등 40개 업종 추가 개발
- (On-line) 어디서나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확인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 구축

〈2〉 실천 공감대 형성

□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운동 추진

○ 중대재해예방에 파급력이 크면서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 추진

< 산업현장의 4대 필수 안전수칙 >

- ① 보호구 지급·착용 : 사업주는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
-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설비· 작업별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
-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서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
- ④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정비, 보수 등 비계획작업, 고위험 작업공정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절차를 제정·시행하여 안전한 작업 유도

□ 안전보건문화 컨텐츠 개발

- 애니메이션*, PPL(Product Placement)**, SNS, 게임 등 새로운 매체 및 컨텐츠를 개발・활용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및 실천 유도
 - *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100가지 주제 대상으로 스토리구성
 - ** 드라마, 토크쇼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 내에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여 은연중에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유도
- 자칫 불안전한 행동을 미화시킬 수 있는 방송 내용에는 안전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

□ 산재은폐 근절

- 노·사·정 공동 TF를 통해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시행
-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산재은폐 근절 및 산재보고제도 정착을 위한 전 사업장 대상 캠페인 추진
- 아울러, 복지부(건보공단), 국민안전처(119, 응급환자 이송기관) 등과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산재은폐 시도를 조기에 차단

□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확산

-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안전점검의 날'을 되살려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 * '안전 점검의 날'을 종전 매월 4일에서 세월호 사고일인 매월 16일로 변경
-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 등과 협업하여 간담회, 현장방문, 각종 산재예방 행사 및 캠페인 등 추진
 - * 예시 :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100만 사업장, 1,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혁신 서약서 서명식 추진 등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시 지역별 안전보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 유도

참고 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비교

구 분		현 행	향 후
안전 보건	환경 변화	제조·건설업, 대공장 중심의 접근 으로 환경변화 대응 미흡	산업구조, 생산방식, 취약계층 증가 등 환경변화 대응
	인적 속성	청·장년, 남성 중심의 안전보건 보호	고령·외국인·여성 등 취약계층 으로 보호 확대
상황 인식	직장 이동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사업장 위주의 접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 이동성 고려한 산업별 접근 포함
	재해 요인	떨어짐, 폭발 등 재래형 사고성 재해 중심 대응	새로운 기계기구, 화학물질, 산업 보건 이슈에 대한 대응 추가
	기업	안전보건 책임의 불명확, 위험의 외주화 문제 대응 부족	원청·발주자의 책임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충
안전 보건	근로자	산재예방활동 참여 미흡	근로자의 참여 제도 마련 및 실천 확대 도모
역 할 수 행	정부	재해율 중심의 정책목표, 재해발생 결과중심 대응	중상해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독 내실화
	전문기관	평가체계 미비, 전문성 부족	상시 성과평가 체계 구축, 안전보건서비스의 종합화·전문화
	재해 다발 요인 관리	재해요인 및 원인에 대한 분석 미비(재해 유형에 대한 대응)	재해의 원인 중심의 선제적 안전 보건 관리 강화
안전 보건	취약계층 지원	대상별 특성화 대책 부족, 노동력 보존을 위한 인식 미흡	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노동력 보존을 위한 지원 (산재예방과 보상의 연계)
대응	안전보건 격차 해소	안전보건격차에 대한 인식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우선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도모
	환경변화 선제 대응	전통적 재해요인 중심의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접근	새로운 재해요인에 대한 고려와 근로자 건강 보호 중심의 접근
	안전보건 법제	방대한 조문, 난해한 전문용어, 복잡한 체계 등으로 인해 수규자의 이해 곤란과 준수가능성 저하	기본적인 준수사항과 세부사항 (업종·유해인자별 예방체계)을 구분하여 준수 가능성 제고
안전 보건	지식 · 정보 기반	각종 사업장 정보가 개별 시스템 으로 구축되어 활용 곤란	통합 산재예방 정보망을 통하여 안전보건 정보 활용 강화 촉진
기 반 구축	안전보건 산업	기업의 안전보건투자 부족, 안전보건시장 위축	안전보건 유인재설계를 통한 산업 육성 및 시장 활력 제고
	안전보건 거버넌스	정부-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정책 전달체계	정부-공공기관-산업계-지역 등 중층적 거버넌스 체계 확충
아저	안전보건 교육	이론 위주의 형식적 교육	현장형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안전 보건 문화	산재보고	산재 은폐 관행 상존	노·사 중심의 산재은폐 근절, 새로운 산재보고제도 조기 정착
확산	안전보건 실천	낮은 노·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칙 미준수 만연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참고 2 과제별 추진 일정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1. 안전보	건 책임 명확화		
	①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산안법 개정	'15
	•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산안법 개정	'16
	•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대상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 15
	▪ 도급 인가기간 설정 등 인가제도 강화	산안법 개정	'15
	▪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강화	산안법 개정	′ 15
	• 안전보건조정관 선임	산안법 개정	'16
	② 특성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		
<1>	• 300인이상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한 검토 및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기간제법 개정 기특법 개정	'16
기업의	▪ 원·하청간 공생 협력프로그램 확대	사업계획 반영	'15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지급	'15
	• KOSHA18001 적용사업장 지원 확대	사업계획 반영	'15
책임 확대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및 교육 실시	산안법 개정	' 15
	• 10인미만 안전보건기술지도 물량 확대	지침 마련	' 15
	③ 기업의 투자 확대		
	• 기업의 안전보건투자에 따른 효과성 측정	실태 파악	'15
	■ 기업재무제표에 '안전보건투자' 항목 신설유도	관련기관 협의	'15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 마련	' 15
	■ 공정안전보고서 주요내용 인근 지역주민에 공개 의무화	산안법 개정	'15
	• 고위험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 지원 강화	고시 개정	'15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안) 마련	'16
	① 근로자의 참여 제도 확대		
	•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	'15
< <u>></u>	•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권한 및 사업주 에게 안전보건점검 실시 요구 제도화	산안법 개정	' 15
근로자의	- 위험성 평가 참여 의무화		'18
참여와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		
역할 강화	• 업종별 안전보건 실천 체크리스트 개발	앱 개발	'15
	• 현장책임자에게 작업제한권 부여	산안법 시행령 개정	'15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 확행	사업계획 반영	'15
	▶노·사 공동 안전보건 실천사업 추진	사업 발굴 및 추진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① 중대재해 중심의 정책목표 정립			
	• 중대재해 중심의 정책목표 정립	사업 목표 등 변경	'15	
	② 사업장 감독 내실화			
	•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 선정·집중 감독	사업계획 반영	' 15	
<3> 정부의	•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종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조치 확행	사업계획 반영	'15	
정책효과성	•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확충	관련부처 협의	′ 15	
제고	•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보강	지침 마련 등	'15	
,	③ 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확충			
	• 산재예방 예산 증액	관련부처 협의	'15	
	• 예산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사업평가 실시	'15	
	▪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사업계획 마련·시행	'15	
	①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정립			
	• 정형화된 업무 민간 이관	(안) 마련	'15	
	▪ 재해예방기관의 HUB 역할 수행	(안) 마련	'15	
<4>	• 연구인력 확충, 연구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안) 마련	'15	
- 전문기관의	•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	(안) 마련	'15	
	②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			
역할 재정립	재해예방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차등관리	지침 마련	'15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 추가	산안법 개정	'16	
	▪ 재해예방업무에 대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직무능력표준 개발	'15	
	• 안전·보건서비스 기관 효율화	(안) 마련	'16	
2. 안전보건	건 대응 능력 강화			
	①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추가	산안법 시행령 개정	'15	
<1>	■ 위험기계기구 조종자의 자격·면허 등 안전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실시	'15	
재해다발	•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15	
요인 특성별	• 영세업체의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확대	고시 개정	'15	
안전보건	② 고소작업시 안전관리 강화			
관리체계	• 클린사업 지원품목 확대	고시 개정	'16	
구축	• 초고층 건축물 안전조치·시공절차 등 기술 지침 정비	지침 마련	'15	
	• 안전보건지킴이 확대	지침 마련	' 15	
	▪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고시 개정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③ 밀폐작업시 안전보건조치 강화			
	▪ 밀폐공간의 범위 확대	안전보건규칙 개정	'16
	•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안전보건규칙 개정	'16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사업계획 반영	' 15
	▪ 필수장비 대여 및 교육 확대	사업계획 반영	'15
	④ 소음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안전보건규칙 개정	'16
	▪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차등관리	사업계획 반영	'16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강화	사업계획 반영	' 15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확대	관련 규정 개정	'16
	5 배달사고 예방대책 마련		
	•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의무 부여	안전보건규칙 개정	'15
	• 배달 관련 당사자별 특성 고려한 예방대책 추진	지침 마련	' 15
	⑥ 미끄럼 재해 예방 강화		
	• 서비스업 중심으로 미끄럼 방지 추진	지침 마련	'15
	■미끄럼 사고사례, 재해예방 매뉴얼, 교육용 동영상 등 제작·보급	매뉴얼 등 제작	'15
	① 맞춤형 안전보건지원 강화		
	• 신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16
	• 신규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패키지 지원	사업계획 반영	'15
	■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4대 실천운동	사업계획 반영	'15
	■ 장년근로자 신체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추진	사업계획 반영	'15
<	▪ 장년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기준 개정 검토	안전보건규칙 개정	'16
대상자 특성별	• 여성 다수 고용 3대 업종 대상 건강관리 주제별 홍보캠페인 전개	사업계획 반영	'15
안전보건	• 여성 다수 고용 직종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15
지원 강화	• 여성 근로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안) 마련	' 15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확대	관련기관 협의	' 15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다국어 안내 자료 작성·배포	자료 개발	'15
	■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관련기관 협의	' 15
	•청소근로자, 현장실습생 다수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사업계획 반영	' 15
	■ 작업매뉴얼 보급 등 추진	매뉴얼 개발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② 재해근로자 직업복귀 지원 확대			
	막춤형 재활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규정 개정	′15	
	·심리 상담 · 재활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규정 개정	′15	
	• 민간의료기관의 산재의료재활 역할 강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보험수가 반영	′15	
	• 산재의료재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자체계획 수립	′15	
	■ 직장복귀 지원금 현실화 제도개선	고시 개정	′16	
	■ 요양신청단계에서 원직장복귀 사업주 상담 및 지원 강화	규정 개정	′15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확대	규정 개정	′15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신규 개발 및 지원 인원 확대	자체 계획 수립	′15	
	• 사고 다발 5대 위험업종에 대한 유관부처 협업 강화	유관부처 협조체계 구축	'15	
	• 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 신설	안전보건지침 정비	'16	
<3> 안전보건	• 대형마트 등 영업장 종합관리 주체와 안전 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 15	
격차 해소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사업계획 반영	'15	
	■ 특수형태종사자와 관련한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체계 구축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15	
	• 자영업자 DB 활용,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	자료 개발	'15	
	①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일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	관련 부처 협의 관련 규정 개정	'16	
	만성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 조치 근거 마련	관련 고시 개정	' 15	
	• 근로자건강센터 확충	건강센터 지속 확충	'18	
<4>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및 자격 합리화	연구용역	'16	
선제적	▪ 자율적 건강증진활동 지원예산 확대	사업예산 반영	'16	
안전보건	▪ 매뉴얼 개발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사례 발굴·전파	공단 사업계획 반영	' 15	
환경변화	▪ 세대별 다발 질병 목록 작성, 맞춤형 대책 수립	연구용역, 대책수립	'16	
대응	● 연령별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배포	가이드제작	'16	
	② 새로운 재해발생요인 관리 강화			
	▪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방안 추진	산안법 및 시행령 개정	' 15	
	■ 감정노동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사업계획 반영	'15	
	• 관리대상 화학물질 범위 확대 및 유해·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규칙 개정	'16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제고	MSDS 이행실태 감독 제도개선	'16
	• 나노물질 정보관리 DB 구축	연구실시 및 DB구축	'19
	▪ 나노물질 공기 중 노출 측정·평가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련 지침제정	' 19
	• 나노물질 취급작업자 보건관리지침 마련	관련 지침 제정	'15
	• 신공법, 신기술에 대한 안전조치기준 마련	연구용역	'16
	• 안전사고 예방관련 기준 신설	연구용역	'16
	• 유해 작업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차등관리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16
	• 분야별 보건진단명령 개선	산안법 시행령 개정	'15
3.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① 법 체계 선진화 추진		
	• 법 분법화 추진	연구용역 실시	'16
	• 분야별 안전보건기술지침 제정	지침 제정	'17
	② 법 적용 범위 확대		
<1>	•법 적용대상 확대 및 개편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	'16
규율체계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	'16
재구축 ③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합리화			
	• 고의·상습성 등을 고려한 벌칙기준 마련	산안법 시행령 개정	'16
	•이행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산안법 개정	'17
	④ 위험성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	<u>루</u> 비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신설	산안법 개정	'18
	①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및 분석 강화		
	• 합리적인 산업재해 통계 산출	통계 산출	'15
	• 통합적인 재해발생 현황 분석	분석	'15
	■ 고위험업종 하청업체 재해통계 통합 산출 방안 마런	(안) 마련	'15
<2>	② 안전보건 지식 기반 강화		
지식·정보	■유해·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예방 대책 수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 15
기반 확충	■ 공단 연구원과 대학과의 기능 분업화	(안) 마련	'16
	③ 통합 정보체계 구축		
	■ 지도·감독 실적 등을 종합한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16
	•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16
	■ 지방관서, 공단,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설정	시스템 개발	'16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일정
	• 안전서비스 산업 활성화	(안) 마련	'15
<3>	■ 안전시설·장비 제조 산업 육성	지원 확대	'15
안전보건	■ 신규분야 발굴 인증기준 신설	연구용역 및 고시 개정	'17
산업 육성 지원	• 산업계와 학계 협력,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협력체계 구축	'15
716	■ 맞춤형 재직자 향상훈련과정 확충	(안) 마련	'15
	■ 범 국가적 리더회의 구성·운영	구성·운영	' 15
<4>	■ 정부부처 등 사업 추진 시 산재감소 목표 설정 하고 실적 관리	관련기관 협의	' 15
- 안전보건	• 안전보건 리더 그룹 타 업종으로 확대	(안) 마련	'15
거버넌스	●주요 산업단지 소속 기업, 유관기관간 안전보 건 협의 강화	관리체계 구축	' 15
子축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기술지도 실적 등 지표화	지표 개발	' 15
	■ 대기업별 지표 값 주기적 평가·공개	(안) 마련	'15
4. 실천 중	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 안전보건교육 제도 전면 개편	산안법령 개정	'16
<1>	■ 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활성화	고시 개정	' 15
교육	■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공단 사업계획 반영	'16
내실화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강화	안전보건교육센터 확충 안전체험관 확충	'18 '19
	•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개발	실무길잡이 개발	'15
	■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운동 추진	캠페인 추진	'15
	■ 안전보건문화 컨텐츠 개발	컨텐츠 개발	'15
	■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시행	(안) 마련, 시행	'15
<2>	■ 전 사업장 대상 은폐 근절 캠페인 추진	사업계획 반영	'15
실천	■ 산재은폐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강화	관련기관 협의	'15
공감대 형성	■'안전점검의 날'활성화	(안) 마련	'15
	■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 행사 및 캠페인 등 추진	협업체계 구축	'15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공감대 형성 유도	관련기관 협의	' 15

참고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총괄

- □ (전반적 추세)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 하지만 최근 **동시 3명 이상이 사상한 재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대형사고가 여전히 많은 상황**
 - * '10년 59건(224명) -> '11년 66건(246명) -> '12년 78건(349명) -> '13년 68건(288명)



② 업종별 재해 현황

- □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 재해자수의 비중도 지속 확대**
 - * 업종별 근로자 비중 추이 : 서비스업 37.1%('03) → 48.4%('13), 제조업 26.8%('03) → 24.5%('13), 건설업 24.9%('03) → 16.6%('13)
 - ** 업종별 재해자 비중 추이 : 서비스업 23.2%('03) → 33.2%('13), 제조업 42.4%('03) → 32.1%('13), 건설업 24.3%('03) → 25.7%('13)
 - 대부분 업종의 재해가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건설업은 증가 추세**
 - *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 건설업 2.26('03) → 1.52('09) → 1.62('11) → 2.01('13), 제조업 1.23('03) → 1.03('09) → 0.75('13), 서비스업 0.46('03) → 0.30('03) → 0.22('13)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약 70%는 제조·건설업**에서 발생
 - * 제조·건설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수 비중 : 72.2%('03) → 73.4%('13)

③ 사업장 규모별 재해 현황

- □ 대규모 사업장(300인 이상)과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모두 재해가 감소
 - * ▲300인 이상 재해율 '03년 0.50→'13년 0.18 ▲50인 미만 재해율 '03년 1.24→'13년 0.86
 -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비중 및 재해율 격차가 지속 증가
 - * ▲ 50인 미만 재해자수(비중): '03년 65,594명(69.1%) → '13년 74,836명(81.5%) ▲ 50인 이상 대비 50인 미만 재해율 비율: 2.23배('03) → 3.37배('13)
 -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 ▲ 300인 이상 대비 50인 미만 재해율 비율 : 2.48배('03) → 4.79배('13)
 - ▲ 300인 이상 대비 50인 미만 사고사망만인율 비율 : 2.97배('03) → 3.54배('13)

④ 근로자 특성별 재해 현황

- □ 고용시장의 다양화로 고령·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재해 증가
 - **(외국인근로자)** 재해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도 국내 근로자보다 높은 상황
 - *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 및 비중 : 2,681명 2.82%('03) → 5,586명 6.08%('13)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전체재해율) : '09년 0.76%(0.70%) → '13년 0.84%(0.59%)
 - (장년근로자) 55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자수,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지속 증가 추세
 - * ▲ 장년근로자 재해자수 및 비중 : 18,030명 19%('03) → 31,816명 34.7%('13) ▲ 장년근로자 사고사망자수 및 비중 : 334명 25.5%('03) → 482명 44.2%('13)
 - (신규근로자) 근속 1년 미만의 저숙련 근로자의 재해 비중이 지속 증가
 - * 신규근로자 재해자수 및 비중 : 50,592명 56.9%('04) → 60,326명 65.7%('13)

5 유형별 재해 현황

- (업무상 사고) 넘어짐, 끼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 5대 재해유형이 전체 업무상사고의 70%를 차지(지난 1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
 - * 5대 다발재해자수 및 비중 : 60,944명 76.5%('04) → 59,462명 70.6%('13)
- (업무상 질병)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 작업자세와 관련된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체의 업무상질병 대비 70% 차지
 - * 신체부담작업, 요통 재해자 및 비중 : 4,112명 44.8%('04) → 5,318명 69.7%('13)
 - 반면, 뇌심혈관질환, 진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 뇌심혈관, 진폐 재해자수 및 비중 : 4,228명 46.0%('04) → 1,500명 19.7%('13)

참고 4 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

조선업

- □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 항목에 '14년 신설한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분야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의 자격 적부, 사용설비 및 방호장치 목록 등을 검토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작업승인 분야 평가항목 신설('15년)
- □ 사업의 규모 및 주요 직종별 맞춤형 지원 실시
 - 중·소규모 조선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 중규모 조선업체(블록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집중 기술지도 실시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연초 계약 시 조선업에 대한 사업물량 할당제도 도입
 - 조선업의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직종^{*}별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보급을 통해 재해취약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 * 용접작업,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비계 등에서의 고소작업, 도장작업 등

2 **철강업**

□ 안전보건이행평가제 도입 추진

- 대형 철강업체(원청)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내 모든 협력·연관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이행평가제* 추진
 - * 사업주가 수급업체를 포함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전문가(안전보건공단, 학계)가 안전보건이행계획의 이행상태를 매년 확인·평가 하여 이를 등급별 차등관리

□ 사망사고 요인별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강화

- 철강업종에서 다발하는 사망사고 요인(크레인, 지게차 취급작업, 정비· 수리 등의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관계부처(산업부), 철강협회, 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철강업 기업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

3 전자·반도체 산업

□ 보건관리추진단 활동 강화

- 사업장 자율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및 보건관리 개선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 지도·점검
-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이 보건관리 활동 전반을 계획·실행·평가 및 보완토록 지도

□ 취급 화학물질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유해물질 종류, 유통·사용, 취급 및 노출 실태 등을 조사하여 사전 예방대책 마련
- 취급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성분에 대해 분석 확인 및 유해물질* 함유시 조치(변경 명령 및 과태료) 등 신뢰성 평가 강화
 - * 제조금지 허가대상 관리대상 물질(산안법), 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등을 통해 직업성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관리

4 화학산업

□ 화학설비 안전보건 관리

○ 화학공장의 정비 보수작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무료 컨설팅을 거쳐 위험등급*을 분류,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기술지도, 점검 감독 등) 확대 * 관심(초록). 주의(노랑). 경계(빨강)

□ PSM 등 위험관리 제도 개선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단계에서 사업장의 보고서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단의 심사 확인 내용 및 방법 강화
- 이행상태평가 항목에 원청의 하청에 대한 도급관리내용, 다양한 비상조치시나리오 작성(비상조치계획와 연계성 적용성 증대) 등을 추가
- 이행수준이 낮은 사업장(M±등급 장기 유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 및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차등관리 강화

5 뿌리 산업

□ 작업환경개선 집중 지원

- 클린, 융자, 안전투자펀드 등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획기적 개선
 - * 위험원 제거ㆍ격리ㆍ차단설비, 위험설비의 대체 및 자동화설비 설치 등
- 산업단지별 현황 파악을 통한 D/B구축, 관리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 전개
 - * 산업단지별 사망만인율 등 재해현황 공표 등

□ 재해유발 기계·기구 관리 강화

- 안전인증 대상이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누락된 고소작업대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산안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고소작업대 등 위험 기계·기구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종자의 자격 · 면허 등 마련

6 **건설업**

□ 공공발주 공사 재해 예방 강화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능력 향상 지원
-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부여
 - 일정규모 이상 또는 분리발주 건설현장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관을 임명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근거 마련
 - 발주 공사중 고위험공사(터널, 교량, 대심도굴착, 초고층빌딩 등)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전문분야 기술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공사현장은 건설안전 분야 경력보유자를 안전전담 감리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현장 건설재해 예방

- 본사 차원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시행토록 지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해 지방관서별 전담 관리
 - 주기적 CEO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PQ 심사시 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 촉구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본사가 중심되어 전국 현장의 자체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도*
 - * 안전관리요원 확대, 수칙위반자 제재 강화, 하청근로자 특별교육 등

□ 중·소규모 현장 건설재해 예방

○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고위험공사(지붕, 도장, 상하수도 굴착공사) 시공 업체에 대한 방문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실시

-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작업발판 일체형인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대폭 확대
 - * '19년까지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14년 70억원)
- 20억미만 소규모 현장을 상시 순회·감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위험현장에 충분히 투입토록 규모 확대
 - * 다세대·원룸·근생시설·상가·공장 신축 등 재해다발 공사현장 위주로 감시, 추락재해예방시설 미설치 현장은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
-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차등관리* 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토록 지도
 - * 신규현장은 평가 우수기관에 위탁토록 모든 건설업체에 안내하고 미흡기관에 위탁한 업체는 점검·감독대상에 우선 선정

□ 건설현장 보건관리 강화

-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건강관리 기술자료 제작, 배포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보유한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근로자 건강관리 홍보강화 및 센터별 특성화 사업 추진
 - * 여수지역의 경우 건설플랜트 노조 등 건설인력 다수 건강 상담 실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보건교육 강화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15년부터 시행되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건설업 보건관리자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 * 주요내용: 건설업의 산업보건 상 유해위험요인(분진,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장해, 밀폐공간작업 등)에 대한 예방대책, 필요 지식 등 기술

6 서비스업

□ 고위험 취약 직종별 재해예방활동 강화

- 통신케이블가설원 등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서비스분야 고위험 취약직종*에 대한 다각적 재해예방 대책 실행
 - * '14년 완료된 '위험직종 기초실태조사'(20개 직종) 결과를 바탕으로 직종별 특성과 안전보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실시

구 분	'15년(7개 직종)	'16년(7개 직종)	'17년(6개 직종)
수행 직종	통신케이블가설원, 택배원, 화물하역원, 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경비원, 밀폐공간작업종사원	폐기물처리원, 차량운 전원, 주차관리원, 건물 외벽청결원, 이삿짐취 급원, 조리원, 시설관 리원	소매), 음식서비스종사원,

○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 대상, 취약계층 근로자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등 지원

□ 사고 다발 5대 위험 업종 맞춤형 지원 시행

- * 서비스업 사고 사망재해의 74%('13년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위험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건물관리업) 대형 본사 소속 현장 순회매니저가 기본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턴트'로 육성, 활용
 - * 대형 본사 소속 사업장이 전체 건물관리업 사업장의 44%, 재해자의 45% 점유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망재해에 취약한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장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확대
- (음식업) 한식, 패스트푸드 사업장 대상, '배달 중 교통사고 예방 사업' 중점 추진(경찰청과 협업, 배달함 부착용 야광표지판 보급 등)
 - * 한식. 패스트푸드 사업장이 음식업 사망재해의 60% 점유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위탁)' 확대 실시 및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추진(공동 컨설팅, 자료보급 등)
 - * 사회고령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 재해가 급격 증가

- (도소매업) 재해 발생 상위 4대 세부업종* 타깃, 중점 관리 수행
 -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금속제품도매, 육류도매, 주유소운영업

□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 사업 개편

- 제조업 위주로 설계,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을영세 소규모 서비스업 특성에 맞게 개편*
 - * 위험성평가 간소화 및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사업 개발 등
- 업종별 직능단체, 유관기관, 대기업 등과의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 확산을 통한 업계의 자율안전보건 활동 촉진
 - 서비스업 대형본사와 가맹본부 등이 협력업체 및 소속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자체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 교육 강화 검토
 - * 장년 및 여성 근로자 등 영세사업장 취약계층 종사자를 위한 '기초 안전 보건교육' 제도의 신규 도입·시행('15년 25천명)
 - **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중 재해다발 업종에 대해 교육의무 부과 추진(산안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 수행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산재예방지표 반영

□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 대형마트·백화점 등 고용·입점형태가 복합적인 경우 영업장 종합관리 주체인 원청에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지도
 - * 사내 하청·파견업체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지도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맟춤형 인증시스템 구축
 - * 가맹본부의 인프라를 활용한 가맹점의 근원적인 산재예방 기반 구축
- 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 신설 및 위험작업별 지침 (Kosha Guide) 개발、보급

참고 5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 구축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로 지정·운영하도록 법령 개정
 - * 10~49인 사업장의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제도화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장려금* 지급
 - * 월 90만원 씩 2년간 지원

② 작업환경 개선 지원

- 클린사업(815억원), 시설개선자금 융자(1,750억원), 안전투자펀드(5조원)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이 개선되도록 집중 지원
 - * 사업장당 지원 한도 : ▲클린사업 :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 10 억원, ▲안전투자펀드 : 1회 최대 150억원(총 200억원)
- 아울러, 안전보건 컨설팅, 기술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병행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유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지도 추진
 - ▲건설업: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중소규모 현장 고위험공사(지붕, 도장, 상하수도 굴착공사)를 시공하는 본사에 대해 컨설팅ㆍ기술지도 실시,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15년 170억원), 안전보건지킴이 확대('15년 230명) 등 병행
 - ▲ 조선업 : 중규모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집중 기술지도 실시하고,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최대한 활용
 - ▲ 뿌리산업 :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안전보건기술지도 물량 대폭 확대

③ 사전 예방감독 강화

- 사후적인 감독(정기감독)물량을 축소하면서, 재해 발생전 선제적 감독(기획감독, 예방감독)을 신설
- (기획감독) 사업장의 사망사고 다발작업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을 선정·집중감독 추진
 - * ▲제조업(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 ▲ 건설업(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 ▲직업건강(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 다발재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감독 실시로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전환
 - * 시기별 재해 특성을 반영, '○월은 ○○재해 예방의 달'등으로 선정·집중 홍보
- (예방감독)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전문컨설팅(안전보건공단) 후 감독관이 이행여부를 확인
 - * 사업주의 자율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되, 이행여부가 확인된 경우 향후 감독대상에서 유예

④ 안전보건 공생협력 강화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원·하청 공동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 의 내실화* 도모
 - *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대해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이행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14년 128개소 → '15년 400개소)
-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간 상호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 * 예시 : 원청의 밀폐공간장소 내 하청업체 작업시 유해가스 차단 및 내부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하도록 허가
- 산재예방요율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유도
 - * 現 제조업 대상 → 재해다발 타업종 추가